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 박균택·주철현·한민수

박정현 • 민형배 • 정일영

유동수 · 장경태 · 김태선

김현정 • 이성윤 • 김남근

박상혁 · 김문수 의원

(1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직자등과 금품등을 공여했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

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 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2 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22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		
	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		
	다)의 배우자. 다만, 제9조제		
	<u>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u>		
	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		
	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